

제재내용 공시

1. 조합명 : 안면도수협

2. 제재조치(요구)일 : 2026. 06. 01.

3. 제재조치(요구)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견책(1명), 경고(5명)

※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재심)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

4. 제재대상 사실

공동대출 모집 및 취급업무 부적정 등

- 기업시설일반자금 취급시 대출모집 관련 절차 및 수수료 비용 취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으며, 공동대출 관련 심사 업무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법규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42조(승인대상 대출금), 제44조(승인신청서 제출서류), 제45조(승인대출금 업무처리), 제48조의3(심사대상), 제48조의4(운영), 제48조의6(업무처리), 제54조(심사사항), 제68조(대출관련 수수료), 제357조(모집대상 대출상품), 제381조(공동대출 취급 가능기관), 제393조(수수료 수취), 제394조(이자 선취 금지), 제397조(사후관리), 제398조(자산건전성 분류), 제401조(구성원), 제403조(개최), 제40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장 제3조
- 「회원조합 감사규정」 제31조(직원에 대한 제재)
-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12조(징계양정기준) <별표>징계양정기준표